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3693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 : 윤영석 • 윤상현 • 강기윤

최형두 • 홍준표 • 윤창현

이철규 • 권명호 • 구자근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17년 기준으로 32%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 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벌칙) ① (생 략)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